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단7168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 종결 2018. 2. 1.

판결 선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 C 및 D은 연대하여 103,526,942원 및 그중 17,936,220원에 대하여 1997. 9. 5.부터, 6,116,135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F, G, H, I 및 J은 망 K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C 및 D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각 20,705,338원 및 그중 3,587,244원에 대하여 1997. 9. 5.부터, 1,223,227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각 2015. 9. 30.까지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E은 피고 A 주식회사, C, D, F, G, H, I 및 J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73,565,593원 및 그중 6,116,135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 피고 A 주식회사, C 및 D은 연대하여 24,914,143원 및 그중 4,385,49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F, G, H, I 및 J은 위 망 K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C 및 D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각 4,982,828원 및 그중 877,098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G,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당시 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와 사이에 각 산림개발자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L	산림조합중앙회	25,410,750원	1989. 6. 27. ~ 1994. 6. 26.
2	M	산림조합중앙회	7,210,500원	1989. 6. 27. ~ 1994. 6. 26.
3	N	산림조합중앙회	35,610,750원	1989. 6. 27. ~ 1994. 6. 26.

나. 위 각 보증보험계약은 피고회사가 산림조합중앙회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하며, 동 연체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당일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다. O, K, 피고 C, D은 위 1, 2, 3번 계약에 대하여, 피고 E은 위 3번 계약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3. 10. 26. 산림조합중앙회에 위 1번 계약에 대하여 17,936,220원을, 위 2번 계약에 대하여 5,659,040원을, 위 3번 계약에 대하여 31,003,6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회사, O, K, 피고 C, D 및 E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40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회사, K, O, 피고 C, D은 연대하여 112,762,768원과 그중 23,448,080원에 대하여는 1997. 9. 5.부터, 6,116,135원에 대하여는 2006. 1.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피고회사, K, O, 피고 C, D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3,565,593원과 그 중 6,116,135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바. 피고회사 등이 위 판결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다음 표 기재의 구상채권이 남아 있다.

1	17,936,220	1997. 9. 4. 현재 12,025,129	29,961,349
2	4,385,494	2015. 9. 30. 현재 20,528,649	24,914,143
3	6,116,135	2006. 1. 12. 현재 67,449,458	73,565,593

사. 한편 연대보증인인 O는 2010. 5. 19. 사망하였고, O의 상속인들은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느단194호 및 2010. 8. 11. 같은 법원 2010느단 262호로 상속포기를 하였다.

아. 또 연대보증인인 K은 2014. 2. 4.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F, G, H, I 및 J은 2017. 11. 13. 위 법원 2017느단45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원고와 피고회사, 피고 D, E 사이: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I 사이: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F, G, H, I 및 J 사이: 자백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① 피고회사, 피고 C 및 D은 연대하여 1번 계약과 3번 계약에 기한 구상원리금 합계 103,526,942원(= 29,961,349 + 73,565,593) 및 그중 1번 계약 잔존 원금 17,936,220원에 대하여 1997. 9. 5.부터, 3번 계약 잔존 원금 6,116,135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위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F, G, H, I 및 J은, 망 K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회사, 피고 C 및 D과 연대하여 각 위 ①항 기재 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0,705,388원(= 103,526,942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705,338원 및 그중 3,587,244원(= 17,936,220 × 1/5)에 대하여 1997.

9. 5.부터, 1,223,227원(= 6,116,135 × 1/5)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각 2015. 9. 30.까지 위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E는 피고회사, 피고 C, D, F, G, H, I 및 J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3번 계약에 기한 구상원리금 73,565,593원 및 그중 원금 6,116,135원에 대하여 2006. 1. 13.부터 2015. 9. 30.까지 위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① 피고회사, 피고 C 및 D은 연대하여 2번 계약에 기한 구상원리금 24,914,143원 및 그중 원금 4,385,49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F, G, H, I 및 J은, 망 K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회사, 피고 C 및 D과 연대하여 각 위 ①항 기재 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982,828원(= 24,914,143 × 1/5) 및 그중 877,098원(= 4,385,494 × 1/5)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일염